

[붙임 1]

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관세조사 유예 요건 및 신청방법

□ 관세조사 유예 대상기업 요건

- 2019년도 수입(輸入)금액 미화 1억불 이하의 성실*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
* 최근 4년 내 통고처분 이상의 처벌받은 사실이 있거나, 구체적인 탈세제보 또는 탈세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기업 등은 조사 가능

- ▶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전년 동기(1~4월) 대비 수출액 또는 매출액이 20% 이상 감소한 경우
- ▶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

□ 제출서류

- 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관세조사 유예 신청서(예시 첨부)
- ② 중소기업 확인서 등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③ 수출실적증명서 등 수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UNI-PASS 확인 가능)
또는 매출차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세무대리인 확인분)

(첨부)

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수출입기업 관세조사 유예 신청서			
1. 기본사항			
회사명	[주]한국	대표자	한국인
소재지	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○번지		
사업지등록번호	123-81-45678	업종/업태	제조 / 음료
대표전화번호	02-123-4567	담당자전화번호	02-123-4568
2. 중소기업 확인			
구분	해당 여부	입증서류	
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	해당	※ 중소기업 확인서 등	
3.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실 확인			
① 수출액 감소	구분	수출액	입증서류
	㉠ '19.1.1. ~ '19.4.30.	10,000 백만원	※ 수출실적증명서 등
	㉡ '20.1.1. ~ '20.4.30.	7,000 백만원	※ 수출실적증명서 등
	㉢ 감소금액(㉡-㉠)	3,000 백만원	-
	㉣ 감소비율(㉢/㉠)	30 %	-
② 매출액 감소	구분	매출액	입증서류
	㉠ '19.1.1. ~ '19.4.30.	10,000 백만원	※ 매출차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등
	㉡ '20.1.1. ~ '20.4.30.	7,000 백만원	※ 매출차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등
	㉢ 감소금액(㉡-㉠)	3,000 백만원	-
	㉣ 감소비율(㉢/㉠)	30 %	-
위와 같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수출입기업 관세조사 유예를 신청하며, 기재내용과 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			
2020년 월 일			
신청인(대표이사)		(서명 또는 인)	
※ 붙임서류 : 1. 중소기업 확인서 등 2. 수출실적 증명서 등(UNI-PASS 확인 가능) 또는 매출차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(세무대리인 확인본)			
관세청장 귀하			